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소셜미션을 가지고 사회적가치 추구를 우선시하는 법인(이하 ‘사회혁신기업’이라 한다) 대표자 및 사회혁신분야 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관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 및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2.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가 및 전문가 발굴 및 육성
3.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4.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간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5.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6.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자문
7.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혁신기업에 자금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8. 타인이 설립한 기금의 위탁
9.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

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법인의 회원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1. 사회혁신기업 및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2.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이에 속한 임직원, 조합원
3.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전문가 또는 예비창업자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법인, 단체, 개인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법인의 운영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탈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원 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4~15명 이내
 2. 감사 2명 이내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감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단, 감사가 부득이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의2(대의원총회) ① 법인의 회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모든 회원은 대의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⑥ 대의원총회가 설치된 경우 이 정관 중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본다. 다만,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⑦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 ⑧ 대의원의 수가 제2항에 따른 최소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없다.
- ⑨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의원의 선출 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위임, 전자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8조 총회의 출석과 위임, 의결권 행사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전자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출석과 위임, 의결권 행사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반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④ 연 1회 이상 내부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②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 및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한다.

제37조(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가장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운영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개정 2023.04.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04.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이사 및 이사장 남궁정

이사 이상진 (인)
 이사 이은화 (인)
 이사 진양희 (인)
 이사 강경환 (인)
 이사 김현정 (인)
 이사 임성중 (인)
 이사 정병익 (인)
 이사 정진영 (인)



서울특별시

